

# 中國 憲法改正(93)의 背景·內容·特徵

- 經濟改革을 中心으로 -

張明奉\*

## 차례

### I. 序 言

### II. 憲法改正의 背景과 經緯

1. 憲法改正의 背景
2. 憲法改正의 經過

### III. 憲法改正의 主要內容

### IV. 憲法改正의 特徵 : 鄧小平路線의 反映

1.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
2.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3. 改革과 開放의 堅持

### V. 結 語

## I. 序 言

中國은 1949년 10월 1일 政權樹立 이래 44년간 여러 차례 憲法的 文書들을 制定 또는 改正해왔다. 中國의 憲法的 文書에는 1949년 9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에서 통과한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 1954년 9월 第一期全人大(全國人民代表大會) 1次會議에서 통과한 '54年憲法', 1970년 9월 中國共產黨

\* 國民大學校 法科大學 學長(憲法學)

第9期 2中全會(中央委員會 第2次 全體會議)에서 통과한 ‘70年憲法修正草案’, 1973년 8월 中國共產黨 第10期 1中全會에서 통과한 ‘73年憲法修正草案’, 1975년 1월 第四期全人大에서 통과한 ‘75年憲法’, 1978년 3월 第五期全人大 1次會議에서 통과한 ‘78年憲法’, 1979년 6월 第五期全人大 2次會議에서 통과한 ‘79年憲法修正決議案’, 1980년 9월 第五期全人大 3次會議에서 통과한 ‘80年憲法修正決議’, 1982년 12월 第五期全人大 5次會議에서 통과한 ‘82年憲法’, 1988년 4월 第七期全人大 1次會議에서 통과한 ‘88年憲法修正案’, 그리고 이번 1993년 3월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에서 통과한 憲法修正案 등이 있다. 이러한 11개의 憲法的 文書중 中國에서 일반적으로 憲法이라 칭하는 것은 ‘54年憲法’, ‘75年憲法’, ‘78年憲法’과 ‘82年憲法’ 등이다.<sup>1)</sup>

現行憲法인 ‘82年憲法’은 지금까지 두차례 改正되었는데, 그 첫번째가 1988년 4월 행해진 經濟條項에 관한 修正이다. 즉, ‘88年修正憲法’에서는 土地의 使用權을 法律에 의하여 讓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0조 4항 후단), 이에 따라 “어떠한 組織이나 個人도 토지를 侵占, 賣買, 賃貸 또는 기타 형식의 不法讓渡를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에서 ‘賃貸’를 刪除하였고(제10조 4항 전단), 이와 동시에 私營經濟의 存在와 發展을 인정하였다(제11조 1항). 당시 憲法改正의 目的是 中國에서 급증하고 있던 私營經濟를 法的으로 보장하고, 國家 또는 集體經濟組織이 土地競賣(土地使用權에 대한 公開入札)를 통한 資金確保라는 ‘資本主義方式’의 도입을 合法化하기 위한 것이었다.<sup>2)</sup> 다시 말해 이 改正條項은 鄧小平이 經濟改革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經濟活性화의 要諦인 私營經濟의 存在·發展과 土地賃貸를 土地使用權의 让渡의 形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改正條項에 의해 鄧小平은 효과적이며 합법적으로 西方의 先進經濟를 받아들이고, 資本主義經濟原理를 도입하여 1978년 12월 第11期 3中全會 아래 經濟改革의 方向으로 설정한 이른바 ‘四個現代化’(工業·農業·國防·科學技術의 現代化)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經濟改革·開放의 계속 추진이란 必要에 의해 이

1) 許崇德, 「中國憲法學」(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6), pp.31~47; 鄭赤琰, “修憲觀念”, 翁松燃編, 「中華人民共和國憲法論文集」(續集)(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7), pp.42~45; 高等教育法律專業自學教材編輯部 編, 「中華人民共和國憲法教程」(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88), pp.68~78.

2) 李谷城, “八大’與中共憲法評議”, 「明報月刊」(香港), 1993年 4月號, p.24.

번 憲法改正도 단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本稿는 1993년 3월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에서 改正된 憲法(이하 '改正憲法'이라 칭함)에 관한 考察을 통해 中國에서 진행되고 있는 經濟改革에 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우선 憲法改正의 背景을 政治的 背景과 經濟的 背景으로 나누어 살피고, 이어 憲法改正의 經過에 대하여 설명한다. 다음에 憲法改正의 內容을 파악한 후, 改正憲法의 特徵에 관하여 논급한다.

## Ⅱ. 憲法改正의 背景과 經緯

### 1. 憲法改正의 背景

이번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1993. 3)에서의 憲法改正은 中國 政治史에서 하나의 큰 變革이고,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의 建設을 위하여 法的 土臺를 마련한 것이며, 中國 社會主義現代化 建設事業과 改革·開放의 發전을 指導·推進하기 위한 것이다.

中國은 이번 憲法改正의 客觀的 基礎와 背景을 “우리나라의 改革·開放과 社會主義 現代化建設의 부단한 發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政治·經濟와 社會生活의 각 方면에 있어서 거대한 变화가 발생하였고, 어떻게 社會主義現代化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새로운 認識과 實踐할 수 있는 經驗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 면에 있어서 중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으나, 그것이 現行憲法에 反映되지 않았고, 또 원래 規定들도 이미 우리나라의 實際的인 狀況에 적합하지 않다”<sup>3)</sup>고 밝혔다. 즉, 한 시대의 中心潮流는 당연히 1國의 根本法인 憲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中國의 ‘82年憲法’은 이미 時代에 뒤떨어져 있어 부적합한 條項을 改正할 必要性에 따라 時代潮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憲法을 이번에 改正하게 된 것이다.

이 改正憲法은 1992년 10월 개최된 中國共產黨「十四大」(第十四次 全國代表大會)에서 결정된 國家指導理念을 그대로 明文化하였으며, 鄧小平이 14년간 改革過程에서 발전시켜온 改革思想을 最終集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이러한

3) 朱思雄, “鮮明的時代特色”, 「人民日報」(北京), 1993年 3月 30日, p.3.

4) 「한계레신문」, 1993년 4월 1일, p.4.

基礎的인 背景은 결국 다음의 政治的인 背景과 가속화되고 있는 經濟改革의 2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 政治的 背景 : 政治的 安定圖謀

中國共產黨「十四大」는 鄧小平이 주도하는 마지막 共產黨代表大會이며 鄧小平 以後時代를 對備하는 會議일 것이라고 예상된 가운데, 第11期 3中全會(1978.12) 아래 鄧小平이 주장해온 理念들을 「中國共產黨 章程」(이하 「黨章」이라 略稱함)에 삽입함으로써 그러한 理念들이 역사적인 지위를 획득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改革·開放政策의 '100年 不變'을 확보하려고 하였다.<sup>5)</sup>

그중 指導思想에 있어서, 中國共產黨「十四大」는 鄧小平이 權力掌握 이후 추진한 일련의 改革理念과 政策에 대하여 '鄧小平路線', '鄧小平理論' 혹은 '中國的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으로 개괄하였고, 이것을 정식으로 「黨章」에 포함하여 5천여만명 黨員의 思想과 行動을 통일하고 지도하도록 하였다. 「黨章」 중에는 비록 鄧小平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總綱에 그의 主張이 삽입되었는데, 이것은 「4個堅持原則」<sup>6)</sup>, 모든 左傾과 右傾化傾向의 反對, 思想解放, 實事求是, 資產階級自由化의 反對 등이다. 동시에 改革·開放의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資本主義 要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中國共產黨은 江澤民이 「十四大」의 政策報告에서 제기한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概念을 「黨章」에 삽입하였다. 다시 말해 改革·開放이 심화될수록 資本主義要素도 갈수록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中國共產黨의 指導者들로 하여금 이 概念을 제기하여 改革·開放政策의 不變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현재 中國共產黨이 이러한 概念을 제기한 중요한 思想基礎에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sup>7)</sup>

5) 鄧小平은 經濟建設의 中心地位는 100年間 不變이라고 강조하였다. 吳安家, “中共‘十四大’前的政治情勢”, 「中國大陸研究」, 第35卷 10期(臺北: 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 1992年 10月), p.6.

6) 이 原則은 鄧小平이 1979년 3월 30일 黨理論工作務虛會에서 천명한 것으로 '社會主義路線의 堅持',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堅持', '共產黨指導原理의 堅持', '마르크스-레닌主義 및 毛澤東思想의 堅持'를 말한다. "堅持四項基本原則"(1979. 3. 30),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144~170; 張公子, “中國의 民主化運動과 改革路線의 向方”, 「統一問題研究」, 第2卷 1號(國土統一院, 1990 春), pp.49~50.

7) 吳安家, “中共‘十四大’後的政治動向”, 「中國大陸研究」, 第35卷 12期(1992年 12月), pp.11~12.

첫째, 計劃經濟가 곧 社會主義는 아니고 資本主義에도 計劃은 있으며, 市場經濟가 곧 資本主義는 아니고 社會主義에도 市場은 있으며, 計劃과 市場은 모두 經濟手段이다.

둘째, 社會主義公有制의 主體地位上 여러 종류의 經濟要素의 共存을 許容한다.

셋째, 대량으로 資本主義國家의 資本·技術과 管理經驗을 도입하여 社會主義를 위하여 이용한다.

이러한 思想基礎는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모순을 능히 조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개재되어 있지만, 鄧小平은 政權을 中國共產黨의 통제하에 둔다면 資本主義要素를 대량으로 도입해도 社會主義制度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였다.<sup>8)</sup>

그리고 中國政治圈의 新舊交替面에서 鄧小平은 「十四大」에서 5個項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여 江澤民의 後繼地位를 더욱 공고히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趙紫陽의 復權을 沮止시켰고, 둘째는 中國共產黨內의 元老들을 權力의 核心에서 은퇴시켰으며, 셋째는 「十二大」(1982. 2)에서 설치하여 10년간 유지해 온 「顧問委員會」를 廢止하여 黨內保守派 元老들의 政治干涉의 機會를 단절시켰고, 넷째는 保守思想을 보유하고 있는 黨內幹部들을 제거하였으며, 다섯째는 2인의 老將軍인 劉華清과 張震을 中央政治局 常務委員會와 軍事委員會에 진입시켜 江澤民의 後繼體制와 改革·開放政策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sup>9)</sup>

江澤民의 政治的 地位의 鞏固化 問題는 鄧小平이 이미 형식상 그 後繼構圖를 완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미완성인 상태이다. 형식상 後繼構圖를 완성한 根據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江澤民을 核心으로 하는 第3代의 集團指導體制<sup>10)</sup>는 中國共產黨 第

8) 「大公報」(香港), 1992年 10月 24日, p.2.

9) 吳安家, 前揭論文, p.13.

10) 第1代는 建黨의 領導와 開國功臣들로서 毛澤東, 劉少奇, 周恩來, 朱德, 陳雲, 林彪, 鄧小平 등이며, 第2代는 華國鋒, 汪東興(凡是派), 胡耀邦, 趙紫陽(改革派), 姚依林, 宋平(計劃經濟派, 陳雲派) 등을 말한다. 그리고 第3代는 江澤民(國家主席 兼 黨總書記), 李鵬(國務院總理), 喬石(全人大 常務委員長), 李瑞環(政治協商會議 主席) 등이다.

13期 3中全會(1988. 9), 第13期 5中全會(1989. 11), 第13期 6中全會(1990. 3)와 「十四大」에서 이미 權力繼承의 合法的인 地位를 취득하였다.

둘째, 鄧小平은 이미 「十四大」에서 改革思想을 구비한 대규모의 指導幹部들을 權力의 核心에 진입시켜 江澤民의 後繼體制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後繼構圖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江澤民의 後繼地位의 公고화에 대해 軍部의 支持程度, 江澤民의 중대한 政治 또는 政策上의 失策與否, 第3代 集團指導體制 内部에서의 權力鬭爭發生 餘地 등이 重要變數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江澤民이 계속 鄧小平의 '政治上 保守, 經濟上 開放'이라는 改革局面을 견고히 固守하여야만 이러한 後繼構圖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다.<sup>11)</sup>

나아가 「十四大」는 政治體制改編을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建設이라는 要請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政治體制改革의 目標는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 民主政治를 建設하는 것이지 절대로 西方의 多黨制와 議會制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中國 政治體制改革의 內容은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수요에 의한 行政效率의 提高라는 行政改革에 국한됨으로써 계속 中國共產黨의 專政(獨裁)制度를 관철하게 될 것이다.

世界情勢의 變化에 對應하려는 中國은 改革·開放政策에 대하여 전체적인 計劃을樹立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채택하여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는 方式이다. 中國은 이 方式을 採擇함으로써 中國의 큰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1989년 「六四天安門事件」과 東歐社會主義國家 및 舊蘇聯의 개혁에 따라 中國共產黨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國內外情勢 變化에 대한 對處, 鄧小平體制 및 江澤民後繼體制의 確立,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등의 문제를 最大懸案으로 여기고 그 代案으로 社會主義法制의 일환인 憲法改正을 통한 政治安定을 모색하였다.

11) 吳安家, 前揭論文, pp.13~14.

12)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社業的更大勝利”, 「新華月報」(北京), 1992年 10號, p.10.

13) '凡是派'라는 것은 華國鋒이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에서 제기한 '兩個凡是論'에서 由來하였다. '兩個凡是'는 毛澤東主席이 제출한 모든 政策決定을 우리 모두 굳건히 維持·保護하고, 毛澤東

## (2) 經濟的 背景 : 經濟改革의 加速化

1978년 12월 개최된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에서 鄧小平의 ‘實踐派’는 마침내 華國鋒의 ‘凡是派’<sup>13)</sup>를 누르고 階級鬭爭의 終結을 선포하여 명확히 黨의 中心任務는 經濟建設이라고 표명함으로써 中國이 經濟發展戰略을 변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국 第11期 3中全會의 개최는 中國大陸에서 社會主義的 毛澤東모델이 종식되고 鄧小平모델이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이른바 鄧小平모델은 實質적으로 資本主義式의 經濟管理方法에 기초하고, 社會主義經濟의 運用메카니즘을 채택하고 유지시켜 社會主義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鄧小平이 建設하려고 하는 中國의 特色을 具備한 社會主義는 實質적으로 資本主義의 要素를 포함하는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이다.

第11期 3中全會 이후 中國은 產業構造의 均衡失敗, 誘引시스템의 歪曲 및 內外資源의 斷絕 등의 缺點을 보완하기 위하여 經濟調整, 經濟改革 및 對外開放經濟를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中國의 經濟改革은 對內的으로는 改革誘引시스템으로, 對外的으로는 沿海經濟開放區를 확대함으로써 外國의 資本 및 技術의導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改革 · 開放을 통해 中國 經濟體制는 중대한 變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는 곧 鄧小平路線의 發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본다.<sup>14)</sup>

① 經濟形態 …… 과거의 命令的 計劃 위주의 生產品調節모델이 점차 公有制基礎의 ‘有計劃商品經濟’(社會主義와 商品經濟를 相互 對立하는 것으로 파악했던 종래 觀念을 타파하고 社會主義經濟는 본래 公有制를 기초로 한 計劃的 商品經濟라는 새로운 社會主義觀으로서 中國의 經濟體制改革의 한 理論에 입각)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② 所有制構造 …… 과거 單一 公有制가 公有制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所有制形式을 띠기 시작하였다.

---

主席의 모든 指示를 우리 모두 始終一貫하여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李谷城, 「中共黨政軍結構」(香港: 明報出版社, 1989), p.135.

14) 高尚全, “在全面深化改革開放中發展社會主義商品經濟理論”, 「人民日報」, 1988年 11月 18日, p.5.

③ 經濟運用메카니즘 …… 과거에 命令的으로 分配를 조절하던 것이 점차 “國家가 市場을 調節하고, 市場이 企業을 引導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④ 經濟結策(政策決定)方式 …… 과거 政企가 분리되지 않은 集中的 政策決定이 政府職能으로 变換하여 단계적으로 政策決定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⑤ 經濟連繫方式 …… 과거 區域分割의 縱向連繫(命令的 體系) 위주가 橫向經濟聯合(單位別 協調體制)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⑥ 全民所有制企業 …… 과거 行政機構의 부속물이던 것이 法人地位를 보유한 獨立的 商品生產者와 經營者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⑦ 經濟管理方式 …… 과거의 直接管理가 점차 間接管理 위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⑧ 社會分配方式 …… 과거 平均主義를 행하고 ‘大鍋飯’(‘한솥의 밥’)이라는 中國의 分配제도 중 平均主義를 비유)을 먹는 供給式 分配가 ‘按勞分配’(勞動力에 따라 分配)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分配方式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⑨ 企業의 勞動人事制度 …… 과거의 固定賃金制와 幹部의 職務終身制가 競爭메카니즘 도입에 따라 勞動優良化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⑩ 對外經濟關係 …… 과거의 장기적인 閉鎖, 半閉鎖型經濟가 國際交換과 合作에 적극 참여하는 開放型經濟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변화는 中國政治의 弛緩과 鄧小平의 意圖에 따른 生生물로서 經濟學界의 思想解放 및 計劃과 市場經濟理論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도출해냈다. 그리하여 1984년 中國共產黨 第13期 3中全會에서 확립된 ‘有計劃的商品經濟理論’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中國의 實際狀況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社會主義 市場經濟理論’이 제기되고 1992년 10월 中國共產黨「十四大」에서 이를 확립하여 經濟改革強化의 理論的 基礎를 정립하고 계속 改革과 開放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동안의 中國 經濟改革의 方向變化를 段階別로 概觀하면, ‘經濟原則에 입각한 改革推進’(第11期 3中全會, 1978. 12) → ‘計劃經濟為主, 市場經濟為從’(黨「十二大」, 1982. 2) → ‘社會主義 商品經濟論’(第12期 3中全會, 1984. 10) → ‘國家는 市場調節, 市場은 企業誘導’ 原則(黨「十三大」, 1987. 10) → ‘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調和’(第13期 4中全會, 1989. 6) → ‘社會主義 市場經濟理論’

(黨「十四大」, 1992. 10)을 거쳐 비로소 市場經濟機能이 中國經濟의 核心概念이 되었다.<sup>15)</sup>

또한 中國에서는 14년에 걸친 經濟改革을 4個發展段階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즉, 第1段階: 農業改革段階(1979. 1~1984. 10) → 第2段階: 都市改革段階(1984. 10~1988. 9) → 第3段階: 整備段階(1988. 10~1991. 12) → 第4段階: 「改革深化, 開放擴大」의 新段階(1992. 1~2000)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이에 따라 中國의 第八期全人大(1993. 3)는 中國共產黨「十四大」가 제출한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에 대한 違憲素地를 방지하기 위하여, 憲法改正을 통하여 經濟改革을 社會主義法制의 면에서 추진하였다.

## 2. 憲法改正의 經過

### (1) 憲法改正의 提案

1992년초 鄧小平의 ‘南巡講話’<sup>17)</sup>를 통하여 中國에는 새로운 改革·開放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同年 가을 중요한 歷史的 意義를 지닌 中國共產黨「十四大」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市場經濟’ 등의 語彙가 최초로 中國共產黨「十四大」報告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黨章」이 그에 상응하여 修正되었고, 憲法의 改正도 당연히 議事日程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몇년간 많은 全人大代表들이 憲法改正問題를 제기해 왔고, 法學界에서도 憲法改正問題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어 왔다.

15) 李種永, “中國經濟의 開放, 改革과 韓國企業의 創出戰略”, 「第9回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 韓·中 및 南北韓 經協의 課題와 對應」(韓國北方經濟學會, 1993. 3. 27), p.33; 吳龍, “14대 全大會이 후 中國政治 展望”, 「中國研究」, 第1卷 1號(大陸研究所, 1993 봄), pp.169~170.

16) 金春松, “中國經濟改革의 現況과 展望”, 「第9回 學術發表大會 論文集」, 上揭論文集, pp.44~47.

17) 鄧小平이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經濟特別區인 深圳·珠海와 工業中心地인 上海·武昌 등을 시찰하면서 행한 講話로서 기존의 政治·經濟狀況과 改革推進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跳躍을 모색한 것이며 第2의 革命이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서 제기한 ‘中國的 特色을 지닌 社會主義理論’은 指導理念으로 뿐만 아니라 張鎮邦, “評鄧小平的南巡講話”, 「中國大陸研究」, 第35卷 6期(1992年 6月), p.5; 文興鎬, “中國指導部의 保革葛藤 展開推移와 14全大會”,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民族統一研究院, 1992), pp.118~120; 中央日報社編, 「中國의 秘密: 300問 300答」, 月刊中央 1993年 新年號 別冊附錄, pp. 198~200.

그렇지만 이번 憲法改正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認識이 바탕이 되었다. 그것은 「十四大」精神을 指導指針으로 하여 國家經濟·政治·社會生活의 중대한 문제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改正하고,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과 黨의 基本路線의 建設을 부각시키고, 10여년간 中國 社會主義現代化建設과 改革·開放의 새로운 경험에 근거하여 社會主義經濟制度와의 관련규정에 대하여修正·補充하는데 치중한다는 것이다.<sup>18)</sup>

1992년 12월 '82年憲法 10週年紀念會'에서 당시 政法系統의 責任者였던 喬石은 '82年憲法'의 훌륭함을 역설하고, 동시에 改革·開放과 社會主義現代化事業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일련의 중요하고 새로운 經驗과 새로운 認識을 갖게 됨으로써 法節次에 따라 憲法의 修正과 补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up>19)</sup>

1993년 2월 14일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는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에 '憲法部分內容의 改正에 관한 建議'를 제출하였다. 이 建議는 改革·開放과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 建設을 새로이 指導指針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는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社會主義 市場經濟'에 대한 內容을 추가하고 '國營經濟'를 '國有經濟'로 수정하였다. 또 '農村중의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의 法的 地位를 확립하고, 게다가 논쟁거리였던 縣·市·市轄區 人民代表大會의 任期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결국 이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建議로 憲法의 前文과 7個條에 걸쳐 10여곳의 改正을 가져오게 되었다.<sup>20)</sup>

이어 2월 15일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 第30次會議에서 이 建議는 常務委員會 委員들의 보편적인 支持를 얻었다. 특히 經濟學者인 劍以寧(全人大 常務委員)은 이 建議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하면서 '國營經濟'를 '國有經濟'로 改正한 것은 비록 1字의 修正이지만, 經濟學의 시각으로 볼 때 中國經濟의 實際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 하고, 원래 "高度文明·高度民主의 社會主義國家가 되도록 건설하자"를 "富強·民主·文明의 社會主義國家가 되도록 건설하자"로 개정하면서 '富強'이라는 2字를 추가한 것은 經濟建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經濟建設과 民主·文明建設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李學

18) "1993, 中國修憲", 「法制日報」(北京), 1993年 3月 22日, p.1.

19) 喬石, "在首都紀念憲法頒布十周年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2年 12月 5日, p.3.

20) 이에 관해서는 "中共中央關於修改憲法部分內容的建議", 「法制日報」, 1993年 2月 16日.

智(全人大 常務委員)는 몇몇 중요한 문제의 改正은 人民의 요구와 희망에 부합하며, 특히 제8조 1항의 改正은 農民의 요구를 反映하여 변화를 두려워했던 그 동안의 憂慮를 해결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21)</sup>

이를 기초로 全人大 常務委員會는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1993년 2월 22일 ‘全人大 常務委員會의 憲法修正案에 관한 草案’을 통과시켰고, 이것을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에 移送하여 審議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

## (2) 憲法改正의 確定

1993년 3월 18일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 主席團은 두번째 회의를 거행하여 3월 14일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가 大會主席團에 제출한 ‘憲法部分內容의 修正에 관한 補充建議’, 2월 14일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憲法部分內容의 修正에 관한 建議’와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가 제출한 ‘憲法修正案 草案’을 全人大에 이송하여 表決에 붙일 것을 결정하였다.

3월 14일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補充建議’는 “中國共產黨領導의 多黨合作과 政治協商制度의 長期間 存續과 發展”을 첨가하였으며, 처음 建議中의 ‘巨視調節統制의 改善’을 ‘巨視調節統制의 補完改善’으로 바꾸고, “어떠한 組織 혹은 個人도 社會經濟秩序를 혼란시키는 것을 法에 따라 禁止한다”는 것을 “國家는 어떠한 組織 혹은 個人도 社會經濟秩序를 혼란시키는 것을 法에 따라 禁止한다”고 수정하였다. 또한 “集體經濟組織은 法律規定에 따라 民主管理를 實行한다”는 것을 “集體經濟組織은 民主管理를 實行하고, 法律規定에 따라 管理人員을 選出 또는 罷免하고, 經營管理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고 개정하였다.<sup>22)</sup>

改正憲法은 그 提案에서 確定까지 社會主義民主法制의 節次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즉,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가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에 修正建議를 제출하였고,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가 ‘憲法修正案 草案’을 통과시키면서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에 移送하여 심의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사이에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는 또다시 수정에 대한 補充建議를 제출하였고,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의 主席團과 大會가 상술한 文件을 심의하고 토론하였다.

21) “1993, 中國修憲”, 前揭新聞, p.2.

22) 上揭新聞, p.2.

결국 1993년 3월 20일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는 세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憲法修正案 草案'을 심의하였고, 3000명에 달하는 全人大代表들이 表決에 참가하였다. '82年憲法'의 憲法改正節次에 의하면, 全人大 常務委員會 혹은 5분의 1이상의 全人大 代表가 提議하고 全人大의 全體代表 3분의 2이상의 賛成으로 憲法改正案은 채택되는데(제64조), 3월 29일 全人大代表의 3분의 2이상의 賛成을 얻어 이번 憲法改正이 確定되었다.

### III. 憲法改正의 主要內容

改正憲法은 中國共產黨의 「十四大」精神을指導指針으로 하여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과 黨의 基本路線을 강조하고, 社會主義經濟制度의 관련규정에 대한 修正과 補充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憲法改正은 經濟分野의 時代潮流에 순응하면서 中國人民의 民心에 따르려는 강력한 意志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3월 29일 第八期全人大 1次會議에서 통과된 改正憲法은 원래 2월 15일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가 第七期全人大 常務委員會 第30次會議에 건의한 憲法修正案에 약간의 修正·添加를 거쳐 공포된 것이다. 다음에 그 改正內容을 살펴본다.<sup>23)</sup>

① 前文 제7단 2번째 句節 …… 改正憲法은 前文에 “우리나라는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고”,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을 건설”하고 “改革·開放을 堅持”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高度文明·高度民主’를 ‘富強·民主·文明’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theory建設의 指導的地位를 反映한 것이며, 또한 이는 완전하게 黨의 基本路線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趙紫陽이 「十三大」(1987. 10)에서 제기한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theory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憲法的 次元에서 인정하고,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中國의 思想 및 行動의 指導思想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또한 改正憲法에서 보여주는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theory의 建設이나 ‘4個堅持’ 다음에 첨가된 改革·開放의 견지는 결

23) 「人民日報」, 1993年 3月 30日, p.4.

24) 서울大 國際問題研究所 編, 「中國 政治經濟 事典」(民音社, 1990), pp.99~104.

국 이 改正憲法에서 鄧小平理論의 精髓를 규정한 것으로 鄧小平理論의 ‘鄧小平思想’으로의 升格으로 볼 수 있다.<sup>25)</sup>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과 黨의 基本路線은 中國의 모든 정책의 指導方針이며, 이번 改正憲法의 核心이다. 이러한 내용을 憲法에 明示한 것은 鄧小平의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theory의 建設을 이용하여 全人民의 思想과 行動을 統一시키고 黨의 基本路線을 堅持하고,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보증하는 것으로서 現實的·歷史的 意義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中國指導者들이 즐겨쓰던 ‘高度文明·高度民主’라는 용어에서 改正憲法이 ‘高度’라는 用語를 삭제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시 中國이 非文明·非民主國家라고 한데 대응하여 ‘高度’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中國은 이미 文明·民主의 國家라는 것이며 장차 더욱 文明的이고 民主的으로 발전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이는 결국 言語遊戲이며 또한 文明이나 民主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改正憲法의 이번 조치는 꾸밈없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sup>26)</sup> 또한 民主와 文明의 용어 앞에 ‘富強’이라는 용어를 침가한 것은 한편으로 經濟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經濟建設과 民主·文明建設의 관계를 더욱 반영시킨 것이라고 한다. 富強한 中國을 실현하지 못하면 民主·文明建設 역시 상응하는 經濟基礎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民主와 文明建設은 富強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sup>27)</sup> 즉, 人民들이 富裕해야 國家가 발전한다는 것을 憲法에 표현한 것이다.

② 前文 제10단 末尾에 添加 …… 改正憲法은 前文 제10단의 “國家는 모든努力을 다하여 各民族의 共同繁榮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句節 다음에 “中國共產黨領導의 多黨合作과 政治協商制度를 英구히 存在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共產黨이 英도하는 多黨合作과 政治協商制度의 實行은 中國의 구체적인 歷史條件과 現實條件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는 中國 政治制度중의 하나의 특징이

25) 이에 관하여는 陳樟津, “鄧小平思想初探”, 「中國大陸研究」, 第36卷 1期(1993年 1月), pp.71~80 參照。

26) 高一民, “修憲：古老的大船向市場經濟海洋”, 「九十年代」(香港), 1993年 4月號, p.28.

27) “適當修改現行憲法是必要的”, 「人民日報」, 1993年 2月 17日, p.4.

며 장점이다. 根本法을 이용하여 이 制度의 장기간의 존재를反映하고, 이를 부단히 補完改善하고 發展시켜 社會主義 民主政治建設의 추진에 대하여 광범위한 愛國統一戰線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意義가 있다. 改正憲法에서 이 문구를 추가한 것은 1989년 中國의 「六四天安門事件」과 東歐社會主義國家의 没落과 蘇聯邦의 解體를 지켜본 中國이 그러한 國內外情勢에 대응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社會主義現代化政策에 知識人們을 보다 적극적으로 參與시키기 위한 意圖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제7조 …… 改正憲法은 제7조에서 “國營經濟는 社會主義 全民所有制經濟이고 國民經濟中의 主導力量이다. 國家는 國營經濟의 鞏固화와 發展을 보장한다”는 條文을 “國有經濟, 즉 社會主義 全民所有制經濟는 國民經濟중의 主導力量이다. 국가는 國有經濟의 鞏固화와 發展을 보장한다”고 改正하였다. 이는 1992년 말 中國의 國家機關 權威部門이 中國經濟類型을 國有, 集體, 私營, 個體, 聯合經營, 股分制(株式制), 外商投資, 港澳臺(홍콩, 마카오, 대만)投資, 其他經濟 등의 9種類로 分類한 데에서 由來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④ 제8조 제1항 …… 改正憲法은 제8조 1항에서 中國農村의 集體所有制經濟에 있어서 中心的인 위치에 있으면서 農民의 生產積極性을 저해하는 ‘農村人民公社’와 ‘農業生產合作社’라는 集體經濟形式을 農村의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憲法에 이 制度를 규정함으로써 中國 農村經濟體制改革의 成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sup>29)</sup>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는 1979년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하면서 農村에서 시행되어 왔고 農民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온 政策으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이 같은 憲法改正은 中國農村의 現實과 中國의 改革·開放政策이 잘 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제15조 ……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目標모델로 실행하는 것은 이번 憲法改正의 중요한 特징이며 그 의의는 크다. 이것은 철저하게 傳統의 高度集中的인 計劃經濟體制를 타파하고,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하는 것이어서 향후 中國의 改革·開放과 經濟建設의 法的 土臺가 될 것이다. 改正憲法은 제15조 2항에 “國家는 經濟立法을 강화하고, 巨視的調整을 보

28) 「人民日報」, 1992年 12月 19日, p.2.

29) 許崇德, “健全法制深化改革”, 「光明日報」(北京), 1993年 4月 21日.

완개선한다”는 條項을 신설하고, 원래 2항을 3항으로 하여 “國家는 法에 따라 어떠한 組織이나 個人이라도 社會經濟秩序를 교란시키는 것을 禁止한다”고 개정하였다. 이것은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발전시키는데 그 속뜻이 있는 것이다. 市場經濟는 일종의 法治經濟이므로, 市場經濟는 高度集中的인 計劃經濟가 行政手段에 의존하여 관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며, 반드시 法律의 引導 · 規範 · 保障과 拘束이 있어야 한다.<sup>30)</sup> 中國이 短期에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를 建設하고 資本主義條件下의 市場經濟運用보다 좋아지려면, 여기에는 건전하고 보완된 市場經濟法體系가 필요하게 된다. 經濟立法의 強化와 經濟의 巨視的 인 調節과 統制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經濟部門의 立法化가 요청된다.

⑥ 제16조, 제17조, 제42조 제3항 …… 改正憲法은 제16조, 제17조, 제42조 제3항에서 中國經濟類型의 分類變化와 計劃經濟를 社會主義 市場經濟로 전환시킴에 따라 字句를 수정하였다. 즉, 제16조의 ‘國家計劃完成’과 제17조의 ‘國家計劃指導’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國有企業의 經營自主權과 集體經濟組織의 獨립적인 經濟活動의 自主權의 行使를 강조하였다. 또한 제16조에서 ‘國營企業’을 ‘國有企業’으로 바꾸고, 제7조 · 제42조에서 ‘國營經濟’, ‘國營企業’을 ‘國有經濟’, ‘國有企業’으로 改正하였다. ‘國營’을 ‘國有’로 改正한 것은 확실히 全民所有制經濟의 所有權과 經營權의 구분을 體現하고, 國有企業改革의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憲法上 準據를 마련한 것이다.

⑦ 제98조 …… 改正憲法은 제98조에서 縣 · 區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한 市 · 市管轄區 · 鄉 · 民族鄉 · 鎮의 人民代表大會의 任期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集體經濟組織의 民主管理形式을 채택하였다. 이에 의해 中國은 縣과 鄉의 地方政權擔當者들의 短은 任期內에 단기적이면서 졸속적으로 成果만을 기대하는 無責任한 政策施行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또 그 職務從事者들의 責任感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IV. 憲法改正의 特徵 : 鄧小平路線의 反映

改正憲法은 前文에 鄧小平路線의 核心內容인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및 改革 · 開放의 堅持를 추가하였다. 이것

30) “憲法部分內容의 修改意義重大深遠”, 「法制日報」, 1993年 3月 31日.

은 鄧小平路線을 歷代憲法이 규정한 毛澤東思想과 같이 鄧小平思想으로 昇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憲法改正은 한마디로 ‘鄧小平 指導理念의 法制化’를 基本方向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다음에 鄧小平路線의 實제내용이라고 하는 ‘中國的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과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및 ‘改革·開放의 堅持’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

鄧小平路線은 1978년 12월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 아래 中國이 추진한 일련의 改革·開放路線을 말하며, 鄧小平이 강조하는 소위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路線을 가리킨다.<sup>32)</sup> 다시 말해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는 鄧小平路線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sup>33)</sup> 1992년 1월 江澤民·李鵬과 楊尚昆은 공개적으로 이 路線을 찬양하였고, 이 路線이 中國의 安寧을 확보하는 路線이라고 강조하였다.<sup>34)</sup> 鄧小平路線은 資本主義의 것인가 社會主義의 것인가(姓資姓社)의 문제로 당내에서 論爭이 있었지만, 이 政策執行이 어느 정도의 확실한 효과를 거둠으로써 鄧小平은 계속 이를 堅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改革·開放政策의 積極推進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에 관하여 다음에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思想路線 …… 鄧小平은 ‘思想解放’을 意識問題의 處理指針으로 삼았고, 이 方針은 中國共產黨 第11期 3中全會 아래 중요한 文件과 최근의 鄧小平의 일련의 談話에서 始終一貫 堅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그리고 經濟發展을 위하여 鄧小平은 「白貓黑貓論」(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됨)을 제기하여 改革·開放路線중에 나타나는 資本主義의

31) 「中央日報」, 1993년 4월 1일, p.7.

32) 鄧小平의 政治思想에 관해서는 張公子, “中國特色의 社會主義와 改革政治”, 「國際政治論叢」, 第30輯 2號(國際政治學會, 1991), pp.257~282; 金永文, “鄧小平의 思想에 관한 研究”, 「國際政治論叢」, 第30輯 2號(같은 호), pp.283~312 참조.

33) 特約評論員, “中共繼續沿鄧小平路線前進”, 「紫荊」(香港), 1992年 2月號, p.6.

34) 楊尚昆, “向海外朋友賀新年”, 「人民日報」, 1992年 1月 1日, p.1.

35) 鄧小平은 “思想解放은 理論과 實際, 主觀과 客觀을 결합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實事求是로서 향후 모든 일에서 實事求是의 精神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思想解放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金永文, 前揭論文, pp.286~287.

要素를合理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대담하게 資本主義의 長點을 이용하도록 주장하는 理論的基礎였다. 예를 들면 그는 深圳에서 證券市場의 機能을 이해한 후 證券市場은 비록 資本主義의 것이지만 社會主義에도 유용하다고 지적하였고,<sup>36)</sup> 廣東에서는 中國共產黨의 黨員幹部들에게 “思想을 解放하고, 용감히 실행해 나가고, 創造精神을 支持하고, 위험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나가자”<sup>37)</sup>고 요청하였다.

② 政治路線 …… 中國은 계속 鄧小平이 제의한 ‘1個 中心, 2個 基本點’<sup>38)</sup>을 관철하였는데, 이것은 思想解放의 基本精神에서부터 추진·발전되어 온 것이다. 1991年 黨中央委員會 工作會議와 第13期 8中全會의 決定에서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미 中國指導階層의 공통된 認識이 되었고, 그들은 經濟發展을 最大的 政治라고 하였다.<sup>39)</sup> 이 路線은 계속 中國共產黨「十四大」의 기본적인 政治路線이 되었으며, 改正憲法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中國은 더욱 經濟建設이라는 中心을堅持한 가운데 모든 기타의 業務도 이에 복종하고 복무케 할 것이며, 절대로 이에 대한 방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中國의 指導者들은 이 政治路線에 의해 中國人民의 中國共產黨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中國共產黨의 地位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③ 經濟路線 …… 전술한 政治路線의 指導下에서 鄧小平은 “生產力의 發展을 中心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社會主義를 施行하려면 반드시 生產力を 발전시켜야 하고, 貧困은 社會主義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sup>40)</sup> 이러한 주장은 가장 먼저 “일부분 사람들의 생활부터 우선 나아지게 하자”에서 출발하여 “計劃經濟를 주축으로 하여 商品經濟를 발전시키자”로 이어지고, 「十四大」와 改正憲法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화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經濟路線의 論點은 社會主義 公有制과 按勞分配原則 및 改革·開放의 堅持였다.

36) 「大公報」, 1992年 1月 28日, p.2.

37) 「大公報」, 1992年 2月 17日, p.1.

38) 이것은 한마디로 中國의 特色의 社會主義 政治路線으로서 ‘經濟建設’을 中心으로 삼고, ‘改革·開放’과 ‘四個堅持原則’의 두가지를 基本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陳長津, “鄧小平思想‘初探’, 「中國大陸研究」, 第36卷 1期(1993. 1), p.75; 張公子, “中國特色의 社會主義와 改革政治”, 前揭論文, pp.269~270.

39) 特約評論員, 前揭文, p.7.

40) 「鄧小平文選」(1975~1982), p.151.

앞으로 中國은 改革·開放政策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中國內陸의 改革面에서 中國은 계속 證券市場의 示範運營·國營企業에 대한 破產法實施의 實驗·住宅改革의 實施에 대한 實驗·外資의 全力誘致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沿海地區一帶의 改革·開放面에서 廣東省의 指導者는 이미 鄧小平이 제의한 “20년내에 아시아의 네마리 龍(韓國·臺灣·홍콩·싱가포르)을 따라잡자”는 構想에 근거하여 다음의 改革措置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金融體制改革의 强化·政府의 機構改編과 權力의 分散·國營企業에 대한 改革의 完遂·勞動就業에 관한 保險制度와 改革의 加速化·開放區域의 擴大와 開放의 增強 등에 중점을 둔 것이다.<sup>41)</sup> 이러한 改革措置가 만약 효과를 얻는다면 市場經濟의 成果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④ 法律路線 …… 法律面에 있어서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社會主義 法制’의 문제로서 이것은 經濟論點에 부응하여 제기된 것이다.<sup>42)</sup> 즉, 한편으로는 法制를 통하여 각각의 經濟 및 經濟制度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法制의 强制性을 이용하여 經濟制度를 포함한 각각의 制度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法制의 기본적 要求는 바로 ‘依據할 수 있는 法이 있어야 하고’(有法可依), ‘法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고’(有法必依), ‘法의 執行은 반드시 嚴格해야 하고’(執法必嚴), ‘法의 違反은 반드시 紛明해야 한다’(違法必究)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基本要求에 따라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규정한 改正憲法은 제15조에서 經濟立法의 强化를 규정하였다.

⑤ 組織路線 …… 中國이 組織路線에서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改革性向 및 專門知識을 겸비한 者들의 발굴이며, 풍부한 經驗과 강력한 推進力を 가진 黨

41) 예를 들면 南沙·大亞灣·南塊 등의 新開發區를 통과하는 珠江三角洲의 開放推進, 東西兩翼의 山地 지역중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대한 開放의 加速化 등이 있으며, 동시에 廣東省에서 생산한 生產品의 輸出을 확대하고, 海外市場을 확대하여 國外에 企業을 설립하고, 副省長인 劉維明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廣東의 株式制에 대한 實驗業務를 가까운 시일내에 전적으로 開放하고, 「廣東省株式制試點施行辦法」도 곧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文匯報」(香港), 1992年 2月 17日, p.1 및 2月 19日, p.2.

42) 中國의 社會主義法制의 强化에 관해서는 張明奉, “北韓憲法上의 權力構造比較 - 舊蘇聯 및 中國憲法上 權力構造의 改編과 관련하여”, 「北韓法律行政論叢」, 第9輯(高麗大 法學研究所, 1992), pp.66~69.

43)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編」(上)(吉林: 人民出版社, 1982), p.11.

員幹部들을 各 指導單位에 배치하여 思想路線과 政治路線을 관철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中國의 “組織路線은 政治路線에 서비스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中國에서는 이미 思想·政治에 있어서 鄧小平路線을 堅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진정으로 經濟를 理解하는 幹부를 選拔하자”로 구체화되어 「十四大」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路線의 指導幹부를 起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2년 鄧小平이 深圳에서 “누구든지 改革을 행하지 않으면 下野해야 한다”<sup>44)</sup>고 강조한 이유이다.

그래서 「十四大」는 指導中心에 대한 鞏固化,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의 積極性, 權力構造의 改編 및 顧問委員會 存廢 등의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결국 保守派들의 退陣이 이어지게 되었다.

## 2. 社會主義 初級段階論

改正憲法은 前文에서 中國은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다”는 문구를 첨가하였다. 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中國共產黨 總書記였던 趙紫陽에 의해 1987년 10월 「十三大」에서의 “中國特色的 社會主義 길을 따라 전진하자”는 제목의 政治報告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것이다.<sup>45)</sup> 당시 中國共產黨은 이 理論을 모든 改革政策을 지도하는 根據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은 趙紫陽이 鄧小平의 적극적인 支援下에 代理總書記<sup>46)</sup>를 담당한 후 改革政策의 理論根據로 강구하여 제기한 것이며, 中國共產黨의 第11期 3中全會 이래의 路線인 ‘1個 中心, 2個 基本點’을 基底에 두고 확립된 이론이다.<sup>47)</sup> 이렇게 형성된 理論이 이번 改正憲法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최소 100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이 理論을 ‘中國的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 建設’의 理論的 基礎로 삼는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改正憲法은 前文에서 ‘4個堅持’ 부분의 후반부에 ‘改革·開放의 堅持’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44) 「大公報」, 1992年 1月 28日, p.2.

45)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十三大」 政治報告), 「人民日報」, 1987年 11月 4日.

46) 趙紫陽이 1987년 1월 16일 中國共產黨 政治局 擴大會議에서 胡耀邦의 失脚과 동시에 代理總書記로 결정된 후 1987년 11월 第13期 1中全會에서 總書記에 選舉되기까지의 職位를 맡한다. 李谷城, 前揭書, p.252.

47) 이에 관해서는 張公子, “中國特色的 社會主義와 改革政治”, 前揭論文, pp.271~274.

다음에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sup>48)</sup>

첫째, 中國이 現在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있다고 인정한 데에는 두가지 意義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中國社會는 이미 社會主義社會이므로 반드시 社會主義를 建立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날 수 없으며, 또 하나는 中國의 社會主義社會는 아직 初級段階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實際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이 段階를 超越할 수 없다.

둘째, 社會主義 初級段階은 모든 國家가 社會主義에 진입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始初段階이 아니고, 특별히 中國같이 生產力이 落後되고 商品經濟가 발달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社會主義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特定된 段階이다.

셋째, 1950년대 生產手段 私有制의 社會主義改造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때로부터 社會主義現代化의 기본적인 실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時間이 필요하며, 이 期間은 모두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속한다.

넷째, 現段階에서 직면한 主要矛盾은 人民의 나날이 증가하는 物質文化의 需要와 落後된 生產力間의 差異이다. 이러한 現段階에서의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商品經濟를 발전시키고, 勞動生產率을 提高하고, 점차 工業·農業·國防·科學技術의 ‘四個現代化’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生產關係와 上部構造中 生產力發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改革하여야 한다.

다섯째, 社會生產力發展이 해결해야 하는 歷史的 課題로는 工業化와 生產의 商品化, 社會化, 現代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섯째, 現在 經濟建設의 戰略配置로서 대략 3段階로 계획하고 있는데, 1段階은 1人當 國民所得을 2배로 올리고 人民의 住宅과 食糧問題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 단계의 課題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段階은 20世紀末에 이르러 1人當 國民所得을 다시 배로 증가시켜 人民生活을 ‘小康水準’(中等生活程度, 1人當 國民所得 800달러 정도 : 먹고 쓰는 것이 頸領한 水準)에 도달하게 하며, 3段階은 다음 세기 중엽에 이르러 1人當 國民所得을 中等級 先進國家의 水準에 이르게 하여 人民生活이 비교적 부유하게 되는 기본적인 現代化를 실현하며, 그 후에도 이러한 基礎위에서 계속 전진한다.

48) 薩公強, “鄧小平社會主義經濟模式的理論基礎”, 「中國大陸研究」, 第32卷 11期(1989年 11月), pp.39~40.

일곱째, 歷史的 任務로는 5大變化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것은 ① 貧困과 落後에서 벗어나고, ② 農業國을 現代化된 工業國으로 변화시키고, ③ 自然經濟와 半自然經濟를 고도로 발달된 商品經濟로 변화시키고, ④ 活力이 충만된 社會主義經濟·政治·文化體制를 건설·발전시키고, ⑤ 中華民族의 위대한 復興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덟째, 여기서의 長期的 指導指針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역량을 집중하여 現代化建設을 진행하고, 生產力의 發展을 전체업무의 중점으로 한다. 生產力의 發展에 유리한가의 여부를 모든 問題의 出發點으로 고려하고, 一切業務의 근본적인 標準으로 검사하고 점검한다.

② 전면적인 改革을 堅持한다. 改革은 社會主義 生產關係와 上部構造의 自我完成이며,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動力이다.

③ 對外開放을 堅持한다. 어떠한 國家도 封鎖狀態에서 발전을 추구할 수 없으며, 鎮國閉鎖政策은 갈수록 낙후되게만 할 뿐이다.

④ 公有制를 基礎로 하여 전격적으로 有計劃的商品經濟를 발전시킨다. 商品經濟의 충분한 발전은 社會經濟發展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단계이며, 生產社會化·現代化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基本條件이다.

⑤ 安定과 團結을 전제로 하여 民主政治建設에 노력한다. 반드시 人民內部의 矛盾을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人民民主專政은 약화시킬 수 없다.

⑥ 반드시 마르크스主義를 指導思想으로 하여 精神文明建設에 노력한다.

아홉째, 中國共產黨의 基本路線은 全國各族 人民을 領導하여 단결케 하고, 經濟建設을 중심으로 하고, '四個基本原則'을 견지하고, 改革·開放, 自力更生, 苦難奮鬥의 創業을 견지하여 우리 國家의 건설이 富強·民主·文明의 社會主義 現代化國家가 되도록 분투한다.

열째, 梗塞과 自由化라는 이 두가지 잘못된 思想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장차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全過程에 관철시킨다. 누적된 '左傾'의 習慣이 대단히 심각하고 改革·開放의 주요한 妨害要素가 이러한 習慣으로부터 유발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梗塞된 思想을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 주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의 改正憲法上의 明記는 社會主義 制度에 대한 中國의 再認識·反省과 함께 그 確固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中國大陸의 生產力의 落後, 商品經濟와 市場經濟의 未發達로 인하여 國營과 集體의 工商業 및 農業에

만 의존해서는 中國人民의 다양한 欲求를 充足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며, 中國의 社會主義現代化를 위하여 모든 非社會主義要素를 合法화하려는 意圖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社會主義와 非社會主義要素間의 衝突問題가 있으며, 이 문제의 解決은 改正憲法의 成敗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 3. 改革과 開放의 堅持

#### (1)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離

生產手段의 所有權이라는 것은 生產手段이 누구에게 歸屬되어 所有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所有權은 한 社會의 經濟性을 결정하는 것이며, 經營權은 生產手段을 누가 使用·支配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經濟의 經營形式이다.<sup>49)</sup> 이러한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離는 中國이 農村에서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를 실행하는 것이고, 都市에서 企業自主權의 理論基礎를 확대하는 것이다. 改正憲法은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離를 강조하는 集體經濟組織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를 살펴본다.

##### 가) 政企分離

法的으로 所有權은 財產의 所有者가 法律의 範圍內에서 財產에 대하여 占有·使用·收益·處分의 權利를 향유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 經濟運用過程에서 生產手段의 占有·使用·收益·處分할 수 있는 權利가 바로 완전한 經營權이다. 즉, 經營權 자체는 바로 所有權의 기본 내용이다. 그래서 國家가 生產手段의 所有權을 保有하면서 企業에게 완전한 經營權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離理論은 中國이 企業改革을 추진하는 이론적인 근거이고, 이것은 國有企業의 全民所有의 性質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經營權을 企業에게 賦與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企業所有權은 國家에 있고 經營權은 企業에 속하는 狀況을 노정하게 된다.<sup>50)</sup>

49) 薩公強, “‘經營權’和‘所有權’分離理論之研析”, 「中國大陸研究」, 第33卷 9期(1991年 3月), p.28.

50) 上揭論文, pp.29~30.

大中型企業의 경우에는 改革前과 마찬가지로 國家가 委任派遣한 대표인 工場長(社長)이 직접 經營하고 管理하지만, 달라진 것은 현재는 政府와 企業을 분리하여 企業의 經營權을 확대하고 일정한 自主權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小型企業에 있어서는 國家가 經營權을 企業에 分散하고 企業은 選舉로 選出된 사람에게 委託하거나 招聘한 工場長(社長)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하여 經營都給責任制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小型國營企業에 있어서는 所有權과 經營權이 분리되었으나, 契約關係를 통하여 다시 連繫되어 있다.

大中型의 國營企業의 所有權과 經營權이 公有制의 기초 위에 통일하였기 때문에 中央集中式의 計劃管理로 인한 弊端은 企業의 활발한 활동을 制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企業에 속하는 권리를 企業에게 返還하는 關鍵은 바로 진정으로 政府와 企業을 分離(政企分離)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철저하게 政府와 企業間의 불합리한 관계를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工場長(社長)은 工場長 · 局長 · 市長 · 部長(長官)의 단계를 거치는 進級에 따른 임명이어서는 안되며, 企業은 企業 · 會社 · 集體會社 · 多國籍會社의 段階에 따라 발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企業은 政府의 干涉과 影響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새로운 經濟環境을 개선하고 權利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 나)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

改正憲法은 農村에서의 ‘家庭生產量聯動請負責任制’<sup>51)</sup>를 憲法에 규정하고, 이 責任制에 의해 農村集體所有制經濟를 한 基本形式과 制度로 만들어 農村經濟政策을 安定시키고, 農村經濟改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要素로 만들었다. 이 請負責任制는 ‘基本的 生產手段의 共有’라는 社會主義的 原則을 견지한 채 土地를 각 個別農家에게 分配해주기 위한 方法으로서 土地의 所有權 自體는 集團的 所有形態로 남겨두고 그 使用權만을 個別農家에게 賃貸하는 것이다. 그 實施形態는 다양하지만 ‘包產到戶’(農家生産量請負制)와 ‘包幹到戶’(農家經營請負制)가 중심이 된다. 이는 個別農家の 自留地(中國의 農業合作化 이후 農村集體經濟組織이 그 構成員들에게 장기적으로 耕作 · 使用하도록 分할하여 配給한 土地를 말하며, 그 所有權은 集體經濟組織에 속하고 그 生產品은 構成員들에

51) 「北方動向」, 1993년 4월호(漢陽大 中蘇研究所), pp.3~8.

귀속함)를 제외한 生產隊所有의 土地를 請負生產制로 分散시키는 方式이다. 즉, 일정한 土地를 國家로부터 分할받아 이에 대한 生產과 經營을 農家가 책임지는 것으로 일정한 액수를 國家에 納付하고, 그 殘餘額은 農家에 귀속되며, 不足分에 대해서는 農家가 賠償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中國에서 '勞動의 質과 量에 따른' 社會主義的 分配原則를 實行하고, 農民의 生產意慾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84년 말 總農家數의 98%에 해당하는 약 1억 8천만 農家가 이 制度를 채택하여 8억 中國農民의 生產熱意를 고무시켰다.<sup>52)</sup>

「十四大」가 閉會된 후, 全人大의 法律委員會는 「憲法修正領導小組」(組長 王漢斌)를 구성하여 憲法中에서 「十四大」의 精神에 違背되는 内容에 대한 改正作業을 진행하였다. 이 「憲法修正領導小組」의 法律專門家들은 農村土地都給制에 관한 討論時 中國의 現行政策은 土地公有制이므로 私人은 단지 都給만을 할 수 있으나, 사실상 農村鄉鎮企業(農村의 鄉·鎮 또는 村에서 勞動者集體所有의 형태로 설립된 企業)이 발전하여 상당수의 農民이 農業을 포기하고 鄉鎮企業으로 유입되거나 商業에 종사함으로써(中國農民의 戶籍은 都市의 戶籍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農民이 工商業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함) 都給으로 분할된 土地를 획득할 수 있는 農業에 종사하는 農民은 制限되어 있고, 그마저 土地를 都給받은 農民의 大多數도 그 土地를 特定食糧이나 特用作物(채소·과일)을 재배하는 專業戶(技術과 特殊能力을 갖춘 農家)에 再讓渡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狀況이 이미 수년전부터 성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法律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憲法改正案에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農民이 分割받은 都給土地를 專業戶 등의 第3者에게 再讓渡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sup>53)</sup> 그러나 改正憲法은 法律專門家들의 이러한 建議는 수용하지 않고, 損害만 되고 利益이 없는 農村人民公社制度를 憲法에서 삭제하자는 建議만을 반영하였다.

52) 武虹光, “中國經濟改革의 實際”, 國民經濟制度研究院 譯, 「社會主義國家에서의 經濟改革」 (1991), p.101; 서울大 國際問題研究所 編, 前揭書, pp.90~94.

53) 許寒生, “中共決定明年人大修憲”, 「前哨」(香港), 1992年 12月號, p.41.

54) 이전 中國經濟類型의 分류기준은 國家統計局과 國家工商業行政管理局이 1980년 公동으로 발표하였다.

## (2) 國有企業

1992년 말 中國政府가 公布한 9종의 中國經濟類型<sup>54)</sup>중 國有經濟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國有經濟는 生產手段이 國家所有에 귀속하는 일종의 經濟類型이고, 社會主義 公有制經濟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中央과 地方各級 國家機關·事業單位와 社會團體가 國有資產의 投資를 이용하여 설립한 企業을 포함하고, 企業化經營을 실행하되 國家가 또다시 經費支給을 허가하지 않거나 혹은 부분적인 經費支給을 許可한 事業單位와 經營性活動에 참가하는 社會團體, 전술한 企業·事業單位와 社會團體가 자신의 資金을 投資하여 설립한 企業을 포함한다.<sup>55)</sup> 이것은 國營이라는 다소 平均主義的 뉘앙스를 탈피하고 ‘社會化’의 본래 意味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sup>56)</sup> 즉, 國營經濟의 國有經濟로의 변화는 經濟의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리와 國家·集體·個體 등의 多種類 經營方式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中國經濟改革과 經濟建設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憲法的 根據를 제공하고 있다.<sup>57)</sup>

江澤民은 中國共產黨「十四大」의 報告에서 “國有小型企業중 어떤 것은 賃貸 혹은 販賣를 통하여 集體나 個人에게 經營하게 할 수 있다”<sup>58)</sup>고 언급하여 國有經濟中 國有企業의 변화를 示唆하였다. 그러나 中國의 法律家들은 이것이 政策的으로는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小型企業이란 어떠한 것인가, 혹은 固定資產이 얼마까지여야 小型企業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解答이 명확하지 않아서 法律用語 특히 憲法規定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憲法 제16조를 江澤民이 「十四大」報告에서 언급한 “各級政府는 政企分離를 엄격히 실행하고, 모든 國有企業은 自主經營·損益의 自己負擔·自我發展·自我拘束의 法人實體이자 市場競爭의 主體이며, 또한 國家에 대하여 國有資產의 價值維持와 價值增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修正할 것을 건의하고, 동시에 改正憲法 總綱에도 “國有企業은 원칙상 賃貸·轉貸(再讓渡)·破産·競賣를

55) “我國經濟類型劃分新標準出台”, 「人民日報」, 1992年 12月 19日, p.2.

56) 「北方動向」, 1993년 2월호, pp.1~9.

57) 이에 관해서는 洪虎, “在憲法原則的指揮下, 加快國有企業改革步伐”, 「法制日報」, 1993年 4月 4日.

58) 江澤民, 前揭報告, p.12.

할 수 있다. 어떠한 個體·集體 및 外資企業은 모두 貸貸·轉貸·破産 혹은 市場에서의 公開競賣가 선포된 國有企業을 貸貸 혹은 收買할 수 있다”<sup>59)</sup>는 條文을 첨가하도록 전의하였다. 그러나 改正憲法은 이러한 市場發展的 建議들을 수용하지 않았다.

### (3) 地方政權의 安定

中國은 地方政權機關의 幹部選出에 있어서 縣級 人民代表大會의 任期는 3년으로 규정하고, 人民政府의 指導階層 역시 3년에 한번씩 選舉를 통하여 교체하도록 憲法에 규정하고 있었다(제98조). 그에 따라 地方政權組織의 幹부들의 變動期間은 상당히 빠르게 되었고, 任期期間중에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려는 地方政權幹부들의 무리한 ‘短期行爲’를 유발하게 되었다. 즉, 地方政權幹부는 “1년간은 觀察하고, 2년째는 實行하고, 3년째는 交替를 기다리는” 상황하에서 中國農村의 改革은 불리하게 유도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各省·自治區·直轄市와 農村 등 地方基層代表들의 요구에 대하여,<sup>60)</sup> 改正憲法은 縣과 鄉 2級의 人民代表大會와 政府人員의 任期를 3년에서 5년으로 延長함으로써 地方政權과 幹부들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業務에 충실토록 도모하였다.

## V. 結 語

中國의 ‘82年憲法’ 이전의 憲法的 文書들이 權力指向的인 데 반하여 이번의 改正憲法은 經濟發展을 지향하면서도 政治體制改革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富裕해진 후 法制를 정비하고, 民主를 실행하고, 政治改革을 추진하겠다는 立場을 보여준 셈이다. 改正憲法은 中國共產黨이 第11期 3中全會 이래 강조해 온 經濟發展路線을 憲法上 명확히 한 것이며, 이는 法을 통하여 鄧小平의 業績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四個肯定’<sup>61)</sup>으로 강조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59) 許寒生, 前揭論文, p.41.

60) “鮮明的時代特色”, 「人民日報」, 1993年 2月 17日, p.4.

61) 李谷城, 前揭論文, p.25.

첫째, 鄧小平의 中國的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理論의 建設을 반영하고, 이를 社會主義建設의 指導指針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鄧小平이 내세운 改革·開放政策의 堅持를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十三大」에서 趙紫陽이 제기하고 鄧小平이 찬성한, 中國은 현재 社會主義 初級段階에 처해 있다는 理論을 확립하는 것이다.

넷째, 鄧小平이 주장한 社會主義 市場經濟理論의 정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改正憲法중에는 여전히 몇가지의 問題點이 남아 있다. 그것은 우선 현재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經濟改革에 符合하지 않는 條文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生產手段의 公有制와 國有經濟를 國民經濟의 主導力量으로 한다든지(제6조, 제7조), 土地는 賣買를 하지 못한다(제10조 4항 전 단)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무튼 장차 改正憲法에 의거해 中國이 計劃經濟를 市場經濟로 전환하는 것은 經濟觀念의 대변화일 뿐만 아니라 全經濟體制와 각 메카니즘 및 구체적인 經濟運用節次의 대변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져야만 비로소 規範的인 市場體系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全體市場을 질서있고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中國의 經濟生活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弊端들은 市場의 無秩序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改革을 진전시키고, 특히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의 建設을 가속화하여 이를 是正하는 것이 긴급한 課題이다. 이러한 課題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改正憲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經濟立法의 強化이며, 그 구체적인 目標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sup>62)</sup>

첫째, 所有權과 經營權의 分離原則에 따라 企業이 당연히 獨立적인 經濟主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급히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法律關係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經濟立法分野에는 勞動力市場, 生產手段市場, 技術市場, 情報市場, 有價證券市場, 資金市場 등의 法律關係가 포함된다.

셋째, 經濟管理方式이 점차 間接管理 위주로 이행됨에 따라 경제의 巨視的

---

62) 趙顯灘, 「中共社會主義經濟法制之研究」(臺北: 國立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1991年 6月), p. 334.

調節 및 統制를 위한 立法體系를 확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市場經濟의 다양화에 따라 專門的이고 業種의인 經濟立法이 요망된다.

넷째, 科學技術의 經濟에 대한 促進作用을 인식하여 社會經濟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社會主義現代化建設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中國은 憲法改正을 통해 經濟發展을 도모하고, 中國의 國民生活水準을 '小康水準'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今世紀 最高의 目標로 하면서<sup>63)</sup> 中國의 特色을 갖는 社會主義의 建設이라는 鄧小平의 理論과 黨·政·軍의 最高指導者인 江澤民의 權力體制를 접목하여 改正憲法의 확고한 시행을 보장하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中國은 改正憲法을 통해 中國共產黨「十四大」에서 결의된대로 改革·開放의 加速化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위한 制度的 基盤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즉, 「十四大」에서 마련된 中國의 特色의 社會主義建設과 1개의 中心('經濟建設')·2개의 基本點('改革·開放'과 '四個堅持原則')에 입각한 政策路線으로 이루어진 鄧小平理論이 改正憲法에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거기에는 이에 기초한 向後 中國改革의 基本方向과 政策이 제시되어 있다.

改正憲法上 中國 改革의 基本方向에 있어 鄧小平의 '政左經右'의 性向(政治는 左傾的 性向이고 經濟는 右傾的 性向)<sup>64)</sup>이 그대로 반영되어, 經濟領域에서는 社會主義 市場經濟의 도입을 통한 더욱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改革을 추구하면서도 政治的으로는 機構改革 및 行政改革에 엄격히 한정시키고, 또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黨·政分離나 權力分散의 방향에서 벗어나 黨·政合一과 權力集中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政治的으로는 共產黨의 領導體制維持와 黨의 一元化機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社會主義國家들의 政治改革의 方向과는 逆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中國에서는 政治體制에 관한 한 앞으로도 상당한 變化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63) 金春松, 前揭論文, pp.55~56.

64) 朴斗福, "中國의 改革政策의 方向과 展望 - 8期 全人大 開催 結果를 中心으로", 「月間 北韓動向」, 1993년 5월호(統一院 情報分析室, 1993), p.153; 「東亞日報」, 1993년 2월 24일, p.4.